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9월 0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전윤철 농업축산과장)

가. 제안이유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례 신설(안 제2조 제1호~제10호)
 - 농업, 농업인, 농촌, 경영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정의 규정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대한 조례신설(안 제4조 제1항, 제2항)
 -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목적과 운영에 대한 규정
-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안 제6조 제10호, 제11호)
 -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각 호의 규정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근거 마련에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속가능,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직접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위 중간지원조직은

국비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전담조직 (사)평창 신활력 추진단 운영에 따른 관리비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추진단은 2019년 법인 설립하여 2021년 사업기한까지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민간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한 영역의 주민·경영체 등의 육성 및 자립을 돕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7.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9.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추진단” 또는 “지원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로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호)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식품산업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사업
8.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모·부성권 보호 및 가사 지원 사업과 취약한 농가복지증진지원 사업
9. 사회취약계층(고령·장애·여성)의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한 농작업 위탁, 소형농기계 구입, 소모성농자재 지원, 인력절감장비 지원
10. 평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11.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